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	

기 업 활 력 제 고 를 위 한 특 별 법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창양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경제환경 속에서 반도체·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분야로의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하고, 탄소중립 기조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체의 수소·전기차,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해서, 법률에서 위임된 신산업의 범위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재편 제도상 신산업의 범위에 국가전략기술 추가 (제3조의2)

조세특례제한법 [별표 7의2]에 열거된 국가전략 기술을 사업재편 제도상 신산업 인정 범위에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조문별 개정이유서 별첨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5호 중 “신성장동력·원천기술”을 “신성장·원천기술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신산업의 범위) 법 제2조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.	제3조의2(신산업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7에 따른 <u>신성장동력·원천기술</u>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	5. ----- ----- <u>신성장·원천기술</u>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6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7의2에 따른 <u>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	
연 락 처	(044) 203 - 4231